



## 각국에서의 고지의무제도의 입법적 개혁

김선정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고지의무제도는 보험 분쟁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문제도 속출하고 있음
  - 여기에 각국은 제도 개선을 통하여 대응하고 있는데, 강한 소비자 보호 경향과 과학 기술의 발달을 반영하고 있으며 변화에 대한 요구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임
  
- 본고는 영국, 독일, 일본 등 우리에게 관심이 큰 나라에서 행하여진 최근의 입법 내용을 살펴 입법 경향을 파악하고 향후 우리의 제도 개선 방향을 전망하고자 하는 것임
  - 각국의 고지의무제도는 그 내용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임
  - 자발적 고지의무에서 수동적 답변의무로의 변화는 아주 강한 추세이며, 고지의무위반의 효과로 비례감액주의도 추세라 할 수 있음
  - 유전자정보의 고지는 일정한 제한 하에 허용하는 추세임
  - 인과관계요건의 요부는 종전과 큰 변화가 없음
  - 계약전발병부담보조항의 허용 여부는 나라에 따라 크게 다르나 보험자가 이를 제한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는 점은 공통됨
  - 독일은 선의계약설에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영국, 일본, 한국은 지난 250여 년간 선의계약성을 고지의무제도의 주요 근거로 이해하여 왔으나 근래 고지의무제도의 국가별 입법개혁에 따라 이를 절대적 원칙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워 보임
  
- 각국의 변화를 고려하여 우리 현실에 최적의 개정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빠른 추적과 심도 있는 분석이 계속되어야 함

## 1. 변함없는 중요 과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sup>1)</sup>, 2018년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민원은 83,097건에 이른다. 이를 권역별로 보면 보험 61.7%로 비은행, 은행, 금융투자 등 타 업권에 비하여 여전히 보험민원이 압도적이다.

보험분쟁은 계약의 경로 중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나 고지의무를 둘러싼 분쟁은 여전히 많고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각국에 공통된 현상으로, 각국은 고지의무제도의 개혁 없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인식 아래 입법적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이 글은 최근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의 고지의무 법제의 변화를 살펴 우리 입법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참고하고자 한다.

## 2. 각국의 입법적 노력



### 1) 영국

#### 가) 개정 경위

2007년 우리 법무부 상법 보험편 개정시안에 등장하기도 했던 보험계약의 선의계약성은 그 입법적 기원을 1906년의 MIA 제17조에 둔 것으로 오랫동안 영국 고지의무제도의 기초였다. 제17조에 이어 제18조의 고지의무는 ‘양 당사자의 자발적 신고의무이며 보험자에겐 정보제공의무 내지 약관설명 의무로 간주되어 왔다. 그동안 영국에서는 중요사항의 판단에 경험 많은 보험기업의 주관적 판단을 중시하였고, 보험계약자의 주관적 요건으로 중과실을 요구하는 우리와 달리 과실만 요구하였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는 매우 열악한 지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미 1957년 법률개정위원회 보고서는 이런 문제들을 암시하고 있었다.

최근 런던시장의 위상 변화와 소비자 보호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고지의무제도의 엄격성을 완화하기 위한 자율규제 등 노력이 진행되어 왔고, 2012년 법은 기업보험과 소비자보험을 구분하기로 입법방향을 잡았다. 개인의 거래, 영업 또는 직업과 전적으로 또는 주로 무관한 목적 아래 계약이 체결되는 소비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계약을 소비자보험으로 정의하고, 종래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평가된 커먼로 룰을 보험계약자 보호 관점에서 완화하는 입법방향을 설계한 것이다.

1) 금감원 보도자료(2019. 4. 30)

## 나) 고지의무제도의 개혁

2012년 법에서는 먼저 기업보험과 소비자보험의 구분입법을 실현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자발적 고지의무제도를 질문에 대한 답변의무로 전환하였고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전부면책주의를 비례감액주의로<sup>2)</sup> 바꾼 것도 획기적 전환이다.

전자는 보험자로서도 업무효율화 관점에서 볼 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부터의 자발적 정보제공에 따른 위험선택은 비현실적이고 고지되는 정보도 균일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자발적 고지의무를 보험자의 질문에 답변할 의무로 바꾼 것이다.<sup>3)</sup> 즉, 고지의무는 보험자의 질문에 대하여 부실표시를 하지 않을 합리적 주의를 기울일 의무이다.

후자의 비례감액주의는 그동안 정직하게 고지하였더라면 보험료가 조금 오르는 정도에 그쳤을 사항도 고지의무 위반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전부를 못 받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자에게 가혹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12년 개정법에서는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로 종전처럼 계약의 취소를 기본으로 하되, ① 피보험자의 의도적 또는 경솔한 위반의 경우 보험자는 의도적 또는 경솔한 위반임을 입증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이 경우 보험료도 반환하지 않으며, ② 의도적 또는 경솔한 위반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하여 보험금지급을 거절하되 보험료는 반환하며, 보험료를 제외한 다른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보험자가 원하면 당해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할 수 있고, 보다 높은 보험료를 부과할 계약이었다는 점을 증명하면 보험자는 비례감액방식으로 감액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제2조~제8조).

고지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없는 사고에 대하여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우리와 같은 소위 인과관계부존재특칙이 없기 때문인데, 역시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개정되지 않았다.

한편 유전자정보의 이용 여부는 법률보다 자율규제에 일임하고 있다. 영국보험자협회(ABI)는 유전자실무규범에서 피보험자가 유전자검사를 이미 받아 알고 있는 사항은 고지하도록 하였다. 현재까지 정부승인을 얻은 것은 보장액 50만 파운드를 초과하는 생명보험계약에서 무도병(Huntington's chorea)에 대한 유전자검사이다.

계약전발병부담보에 대하여는 이를 고지의무의 잠탈 조항으로 보지는 않으며, 금지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계약자보호 차원에서 이 조항의 남용을 제한하는 판례가 존재한다.

## 다) 평가

- 2) 흔히 pro-rata principle을 비례감액주의라고 표현하지만 여기에는 ① 제대로 고지되었더라면 본래 지급하였을 보험료에 대한 비율에 응하여 보험금을 삭감하는 비례감액원칙(프랑스보험법전 113-8조 제113-9조), ② 고지가 바르게 되었다면 성립하였을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보험급부를 행하는 인수기준감액주의(스웨덴 보험계약법 제6조, 오스트레일리아 보험계약법 제28조, 독일보험계약법 제19조), ③ 과실의 정도 등 개별사정에 응하여 감액을 행하는 비율적 감액원칙(스웨덴 소비자보험법 제30조) 등 여러 유형이 존재한다.
- 3) 프랑스법계와 밀접한 벨기에 보험계약법은 답변의무인 프랑스와 달리 자발적 고지의무를 고수하는 등 일부 국가는 여전히 자발적 고지의무를 고수하고 있다.

2012. 3.의 「2012 소비자보험(고지·표시)법(the Consumer Insurance (Disclosure and Representations) Act 2012(c.6)」은 영국보험법 현대화의 징표라 할 수 있다. 이 개혁은 2015년 보험법(2016. 8. 10.시행)에 따라 비소비자보험(non-consumer insurance)에서의 고지의무 개혁 등 해상보험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이로써 해상보험법의 고지의무조항(제17조~제21조)과 판례에 의하여 규율되던 가계보험(소비자보험)분야의 고지의무제도는 물론 기업보험분야의 고지의무도 보험계약자 보호라는 큰 방향에서 개혁이 마무리되었다. 이는 EU 동향과도 부합한다. 그동안 소비자보호노력이 감독청과 사업자단체 등의 자율규제방식으로 전개되어 실효성에 의문이 있었으나 법제화로 명확해졌다. 다만 개정내용이 완벽한 소비자보호주의라고 하기는 어렵다. 2012년 개정법이 MIA 제17조를 명시적으로 폐지하지는 않았지만 2012년 개정법 제2조 제5항 a호는 소비자보험계약이 최대선의계약의 하나라는 취지의 어떠한 법규칙도 개정법이 요구하는 범위에서 수정된다고 규정하였다. 답변의무로의 전환, 비례감액주의 채택은 선의계약성의 수정에 해당한다. 그러나 제척기간을 규정하지 않은 것, 인과관계 불필요 원칙을 유지한 것은 선의계약성의 표현이고, 최대선의는 여전히 보험자의 행위규범이라는 시각이 존재한다.

## 2) 독일

### 가) 보험계약법 개정

1908. 5. 30.의 보험계약법을 전면개정하기 위한 보험계약법개정전문가위원회가 2000. 6. 7. 연방법무부에 구성되어 2004. 4. 19. 개정정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기초로 연방법무부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정한 보고자 초안을 2006. 3. 13. 공표하였다. 2007. 7. 5. 연방의회 의결과 2007. 9. 21. 참의원 결의를 거쳐, 2008. 1. 개정법이 시행되었다.

1세기만에 이루어진 개정법은 체제를 일신하고, 내용도 시장의 변화, 과학기술발전, 유럽계약법의 진전을 반영하였다. 유럽연합은 소비자보호의 소용돌이에 있었고 새 법도 이 흐름을 따랐다.

개정법은 보험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여 보험료불가분원칙을 폐기하고, 과학기술에 따라 보험자의 정보제공을 문서가 아닌 텍스트형식으로 제공토록 하였다.

### 나) 고지의무제도의 개혁

구 보험법 제1절 제2장(제16조~제34조a)에서 규정하던 고지의무와 위험증가규정은 제21조~제32조로 이동하였고, 내용에 큰 변화가 있다.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텍스트형식의 별개의 통지를 통하여 알려주어야 하는데, text form은 텔레그램, 텔렉스, 텔레팩스, 이메일 등 내구성 있는 전달수단으로 구두전달시 수신자의 오인을 방지하고 수신자가 반복해서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독일민법 제126b). 고지는 계약체결 시까지 하여야 하고, 문

서형식의 질문에 ‘답변할 의무’이다.<sup>4)</sup>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도 계약자 보호측면에서 개정되었다. 즉, 단순한 전부 또는 전무원칙(Alles-oder-Nichts-Prinzip)은 계약자의 책임을 실제로 계량하기 보다는 미필적 고의나 인식 있는 과실 등 어느 한편으로 분류해야 하는 주관적 인식에 따라 급부를 결정하므로 가혹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를 반영하였다. 악의적인 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면책된다.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 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보험자의 해제권은 배제되며 다만 1월간의 해지예고부 해약을 할 수는 있다.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나 보험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라면 굳이 면책으로 처리하지 않으며, 보험자의 사기는 엄중히 다루되 단순한 과실은 면책사유에서 제외 하는 등 보험계약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를 보험자의 권리에 면밀히 연계하는 방향에서 개정하였다.

보험자가 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알면서도 계약자가 잘못 제공한 정보에 기하여 달라진 조건으로라도 계약체결에 나갔다면 보험계약자의 중과실을 이유로 한 보험자의 해제권 및 제19조 제3항 제2문(앞의 1개월간 해지예고부 해약)에 의한 해지권은 부인된다. 이때에 보험료가 10% 이상 높아졌거나 고지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담보가 배제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통지도달 후 1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자의 권리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월내에 행사되어야 한다(제21조).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후 해지권행사 시까지 사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금지책임이 없으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이 사기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이 있다. 고지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없을 경우에도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해지권행사가 기간은 계약체결 후 5년이며 보험계약자가 고의 또는 사기적으로 고지의무에 위반한 경우는 10년이다.

한편 독일 법원은 계약전발병부담보조항을 고지의무조항의 잠탈이라는 이유로 무효로 본다. 일본의 소수설과 우리 금감원 분조위 조정사례(2017. 6. 27. 조정번호 제2017-9호)가 독일 판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010. 2. 1. 발효 독일 유전자진단법(Gesetz über genetische Untersuchungen bei Menschen: GenDG)의 보험관련 조항은 제18조 단 1개이다. 유전자검사 또는 분석을 실시하도록 요구하는 것 또는 ‘이미 행하여진’ 유전자검사 또는 분석 결과 또는 데이터의 통지를 요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결과 또는 데이터를 수령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나 이미 행하여진 것의 활용은 생명보험(Lebensversicherung), 취로불능보험(Berufsunfähigkeitsversicherung), 불가동보험(Erwerbsunfähigkeitsversicherung) 및 간호보험(Pflegerentenversicherung)의 보험금액이 30만 유로를 초과하거나 또는 연금액이 3만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또 보험계약법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와 제47조(소위 정보의무)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과거의 질병(Vorerkrankungen) 및 현재의 질병은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독일보험계약법(VVG)상 ‘정보’는 고지의무(제19조),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의 고지 등(제20조), 고지의무 위반에 의한 보험자의 해지권 등(제21조), 악의의 기망에 의한 보험자의 해지권(제22조), 타인을

4) 『정부법안이유서』는 이를 가장 중요하고 새로운 규정이라고 표현하였다.

위한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고지(제47조)에 관련된다.

## 다) 평가

2008년 개정 보험계약법은 질풍노도와 같은 유럽연합의 소비자보호 흐름에 합류하였고, 보험단체의 이익과 개별 보험계약자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단체의 절대성보다는 이익형량에 의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개정법은 연방법무부가 제시한 소비자보호 제고, 적절한 이해 조정, 생명보험의 현대화라는 목표를 이루었다. 보험계약체결의 필수경로이고 분쟁다발구간인 고지의무제도와 관련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의무로 전환하였고 사기적 의도나 중과실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인수기준감액원칙에 따른 해결을 도모한 제19조와 제21조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사기적 의도나 중과실로 고지의무에 위반한 보험계약자는 여전히 보호하지 않는다. 한편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도 주목할 만한 것이지만(제7조) 그 내용의 명확성에 대하여는 비판적 입장도 있다.

계약전발병부담보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보다가 몇 건의 판결로 무효조항으로 굳어졌다. 고지의무조항의 잠탈조항이라는 이유에서인데, 고지의무자가 불가쟁조항에 의하여 보호받는데 대하여 보험자가 불만을 갖고 대항하여 동원한 부담보조항의 역사적 경위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다만 보험자의 다른 대항조항인 사기 무효주장은 인정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계약법상 신의성실(Treu und Glauben)원칙이 존재하지만 이것이 특히 보험계약법의 해석 원칙으로 강조되지는 않았고, 선의계약성은 1919년 독일 보통해상보험약관 제13조에 드러나 있는 정도였다. 그 결과 최대선의원칙에는 관심이 없다.

## 3) 일본

### 가) 개정 경위

일본 보험법은 1899년 상법 제2편 제10장으로 제정되어 1912년 일부 개정이 있었으나 일본에서는 2008. 5. 30. 개정(2010. 4. 1. 시행)을 ‘100년만의 개정’으로 자평하고 있다.

‘보험법의 현대화’란 기치를 걸고 상법 보험편을 ‘보험법’이란 법률명으로 독립하여 단행법전화하고, 재판 관규범이라는 지적을 수용하여 용어를 쉽게 바꾸어 보험제도 이용자의 행위규범으로 전환하는 등 형식을 쇄신하였다. 내용면에서도 여러 조항을 신설하는 등 큰 변화가 있었으나 가장 치열하게 논의된 것은 고지의무 관련 사항이다.



## 나) 고지의무제도의 개혁

법 개정을 주도한 법제심의회 보험법부회회장인 山下友信 교수는 증의원심의과정에서 고지의무제도의 개혁을 보험계약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소개하였다.

상법 보험편이 통칙-손해보험-인보험으로 구성되는 우리와 달리 일본 법은 대طم 손해보험을 규정하는데 그 내용은 대체로 1960년 우리 상법 제정 당시의 보험편의 원형이라 할 수 있었다.

2008년 개정법은, ① 상법에는 규정이 없었지만 질문표에 답하는 거래관행을 반영하여 자발적 고지의무를 수동적 답변의무로 전환하였고, ② 답변할 중요사항은 질문표에서 질문한 사항으로 제한, 결국 고지할 중요사항은 종전 상법의 '중요사항' 중 질문한 사항에 한정하여 분쟁을 크게 감소시키며, ③ 보험모집인(사실상 모집위탁관계에 있는 모든 자를 보험매개자) 등이 고지의무 위반을 권유하거나 이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징역 또는 벌금 등 형사처벌과 보험자의 손해책임 규정이 있는데 이에 더하여 보험법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제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방해 행위와 고지의무 위반 간에 인과관계 부존재 시는 해제가능)하여(제 28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 등) 계약유지의 민사보호를 규정하였고,<sup>5)</sup> ④ 고지의무규정 중 제척기간 규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하여 우리 상법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와 유사한 규정을 두는 등의 개정을 하였다.

고지할 중요사항이 무엇인지는 해석에 일임(객관적 기준설이 다수설이며 판례)하고, 보험계약자의 악의·중과실로 인한 고지의무 위반 시 해제(우리의 해지와 그 효과가 동일)할 수 있다는 전통적 견해에 대하여 과실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해제한다면 보험계약자에게 조사 의무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것이 최근의 판례와 유력설이다. 인과관계 요건은 유지하였다.

일본의 경우 보험법 개정 시에 계약전발병부담보조항의 법제화가 논의되었으나, 보험상품의 담보내용에 관한 것을 법률로 규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보류하였고 그 대신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일본생명보험협회가 가이드라인을 작성·제시하여 실무에 참고토록 하고 있다.

계약전발병부담보조항은 고지의무 조항과는 등장배경, 존재이유가 다르며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나, 보험자가 절제력을 발휘하여 합리적으로 운용하자는 분위기가 강조되며, 아예 무효로 보자는 소수설이 있다.

## 다) 평가

역사적으로 고지의무의 근거는 선의계약설에서<sup>6)</sup> 위험측정설로 바뀌는 추세이다.

1900년 상법은 고지의무 위반인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였고 1912년에 해제로 개정된 점에 비하여 보험계약자 보호로 기울어지고 있다. 극단적으로 고지의무 폐지론도 없지 않다.

5) 손해배상은 보험계약자만 청구할 수 있는 문제점(일본 보험업법 제283조 제1항, 우리 보험업법 제120조 제1항)도 보완하였다.

6) 역사상 가장 유명한 Carter v. Bohem(1766) 3 Burr 1905.의 영향으로 1906년 영국해상보험법 제17조가 명정하였다.

2008년 개정 시 보험법 전체를 통하여 가장 치열한 쟁점이며 다수학자의 지지를 받던 비례감액 (pro-rata) 원칙은<sup>7)</sup> 실무자들의 업무과중 등을 이유로 도입을 포기하였다.<sup>8)</sup> 인과관계 부존재 특칙은 유지하였다.

‘다른 보험계약의 존부’가 고지할 중요사항인지가 치열하게 논의되었으나<sup>9)</sup> 도덕적 위험을 추측할 사항은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사실로 기 어렵고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우며 위험변경증가의 통치라 하기도 부자연스러워 별도로 규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 대신 법제심의회 보험법부회가 공개한 해결방안은 타보험계약의 존재가 아주 과중하여 보험자가 계약체결여부를 좌우할 정도가 될 때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 사유로 삼되 인과관계 부존재 때문에 보험금은 지급하고(제28조, 제55조, 제86조 참조), 타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불고지가 당사자의 신뢰손상으로 당해계약존속을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중대사유에 의한 특별해약권행사 대상(해제하되 중대사유발생시부터 해제 시까지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금은 불지급, 제30조, 제57조, 제86조)이 되도록 하였다.

이 해결 방안이 따르면 결국 다른 보험계약의 존부를 알릴 의무는 존재한다. <sup>10)11)</sup> 그러나 제척기간의 존재, 인과관계 부존재 특약, 중대사유 해제를 고려할 때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는 보험사고와 무관하기에 질문할 수 없는 사항으로 피보험자의 보험료계산에 필요한 보험위험사실을 수집하기 위한 제도라는 측면이 강조된다.

향후 pro-rata 원칙 채용 논의가 재연될 가능성 있고, 이와 더불어 인과관계부존재 특칙 폐지론, 법제화를 미루어둔 계약전발병부담보에 대한 평가와 대응, 유전자정보 활용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 3. 맺는 말

위의 주요 입법례에서 보듯이 소비자 보호라는 시장의 요구와 정책방향, 과학의 발전과 기술의 진보라는

- 7)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등이 채택하였다. 이 원칙에서도 해지할 경우는 있다.
- 8) 포기이유는 고지의무 이행자와의 형평성, 보험실무와 재판상 고의와 중과실 구별의 모호성, 업무처리기술상 복잡, 고지의무 위반계약을 계약체결 시로 소급하여 시정하는 것의 정당성 여부, 소송상 입증과정서 보험자의 인수기준 노출로 도덕적 위험 조장, 외국의 경우 해지권행사기간 무제한 사례, 재판실무상 고의인정이 드물어 보험금지급과 보험료인상의 악순환, 보험자의 해지권조작사유나 인과관계 특칙 등 소비자보호 수준의 종합적 평가가 필요하다.
- 9) 고지의무 문제로 보면 ‘보험자가 인수여부를 판단할 자료를 숨겨서는 안 된다(위험추정설)’는 입장과 ‘사행계약의 급부에 영향을 줄 정보를 숨기는 것은 불공평한 계약이다(선의계약설)’는 관점에 모두 부합한다.
- 10) 그러나 입법당당자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는 판결이 등장하였다. 最高裁 2015. 2. 22. 民集62卷2号576頁.
- 11) 2008년 법무부 상법(보험편)개정안에는 다른 생명보험계약의 고지의무(안 제732조의3), 둘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의 통지 의무(안 제672조의2)가 있었다.  
우리의 경우, 보험개발원 보유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 등이 2016년부터 신용정보원에서 통합 관리되고, 신용정보원과 각 보험사 간에 IP시스템으로 연결되고(보험사직원 개인별 아이디와 패스워드 부여 안함) 보험사 시스템은 외부인터넷과 망분리가 되었다. 신용정보원시스템은 주민등록 등 개인인식 표지로 조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데이터 자동조회방식으로 보험가입 내역, 보험금지급액 등 확인 가능하다. 보험사고정보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이 명백하지만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중과실 있어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서울고등법원 2016. 4. 21. 선고 2015나2043880 판결(확정)이 더욱 일반화될 것으로 보인다.



거스를 수 없는 산업환경에서 각국은 고지의무제도를 보험법 및 관련 법률을 통하여 정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보호와 같은 강한 경향성에도 요구에 불구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원형을 찾기 어렵다.

자발적 고지의무에서 수동적 답변의무로의 변화는 아주 강한 추세이며, 고지의무위반의 효과로 비례감액 주의도 추세라 할 수 있다.

유전자정보의 고지는 일정한 제한 하에 허용하는 추세이다.

인과관계요건의 요부는 큰 변화가 없으나, 우리의 경우 표준약관에서 삭제한 계약전발병부담보조항의 허부는 나라에 따라 크게 다르며, 다만 보험자가 이 조항을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고지의무제도는 앞으로 계속 변화 요구에 직면할 것이 분명하다. 예컨대 보험이 전제하는 위험 단체성의 소멸 가능성에<sup>12)</sup> 따라 보험계약의 선의성이 약화되고 있으며, 맞춤형 보험에서는 고지사항도 달라질 것이다.<sup>13)</sup> 설계사, 대리점, 보험중개사에 의한 판매형태의 변화도<sup>14)</sup>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나라 상법 보험편의 개정, 보험업법과 약관규제법, 보험에서의 유전자정보 고지를 원천 차단한 2004년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46조), 과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에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균형 있게 조정할 이상적 규제를 해나가기 위하여 보험선진국의 입법동향에 대한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빠른 추적을 통하여 우리 법의 내용을 구축할 필요가 크다.

보험제도가 전제하던 위험단체의 개념이 약화되고, 1766년의 Carter v. Bohem 사건 이래 지난 250여 년 동안 여러 나라에서 크게 의심할 바 없던 최대선의의 원칙이 더 이상 고지의무제도의 이론적 지주라 하기 어려워졌다. 현실은 보험계약자측의 약한 악의(weak bad faith)는 사실상 선의(good faith)로 간주되는 상황이다. 최대선의나 도덕적 위험보다는 기술적 측면에서 고지의무제도의 변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kiri**

12) P2P 보험사들은 단체성보다는 개별성을 강조하는 맞춤형 위험상품을 판매하고 block chain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별 처리를 지향하여 수지상등의 원칙, 계약자동등취급의 원칙을 약화시키며, 위험측정을 위한 기법도 고지의무에 의존하기 보다는 과학적 기술이나 통계에 의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더리움에 기반한 P2P보험은 지인들 간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보험상품을 통하여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는 보험모델로 보험자의 위험인수가 아닌 계약자 간 위험 분담 형태를 지향한다.

13) 공유경제, 자율주행자동차 등은 개인별 위험을 중시하지 않게 되며, 고지사항은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이미 보험사가 확보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위험을 측정하고 텔레메틱스나 웨어러블, 스마트 홈 디바이스 기기를 활용하여 위험을 체크하고 분석하므로 통지의무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충실한 수집자료는 계약갱신이나 보험계약 부활 시 고지의무에 대치될 가능성이 있다.

14) 전통적인 판매방식과 달리 다수 보험회사의 다양한 상품을 분석해 놓고 최적의 상품을 찾아 주는 aggregator와 가격비교 웹사이트(Price Comparison Website: PCW)는 보험업법상 보험중개사와 그 법적 지위가 유사한데 그들은 고객의 정확한 입력정보를 기초로 가격을 산출하고 최적의 보험상품을 탐색하고 몇 개의 정형화된 사정만 입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위험인수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이들이 연결해주는 보험자에게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고객입력정보를 실시간 보험자와 공유하며 계약체결을 유도하는 기업의 영업활동은 고지사항의 수령 및 위험선별 기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자동차 보험가입 희망자가 휴대전화로 차량번호판을 찍어 보내면 빅데이터와 IoT를 통해 필요한 고객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위험인수를 결정하고, 고지할 사항을 없애거나 줄이는 것 등이 그 예이다.